

「2025학년도 이후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 (2024.9.12.) 주요 내용

1. 학점이수 인정기준

- (적용시기 및 범위) '25년 고1부터 전체 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용
- (졸업 기준)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 시 졸업 인정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기준은 유지
- (학점이수 인정기준)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기준 적용
 - (과목 이수기준) 과목별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



※ 교양과목과 학교 밖 교육과목은 출석률 기준만 적용

-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기준) 고등학교 전체(3개년)의 실제 운영 수업횟수의 2/3이상을 출석하면 학점 취득을 인정
 - ※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학생부의 특기사항에는 실제 참여한 활동을 입력

■ 귀국학생 및 전편입생의 출석률 기준 ■

- ▶ (전·편입생 등) 원적교와 전·편입교의 과목이 같은(유사) 경우 원적교의 결과(缺課)횟수를 전·편입교 출석에 반영하여 출석률을 산출하되 학점이 다를 시에 환산하여 반영. 단, 원적교와 전편입교간 과목이 일치하지 않아 신규과목으로 출석률을 산출해야 하는 경우 원적교의 과목 평균 결과 횟수를 산출하여 신규 수강과목에 각각 반영
 - * 재입학, 전입학, 편입학, 복학 등 학적 변동자, 중도 위탁포기 학생 등
- ▶ (귀국학생) 학기 중 전·편입 하는 경우, **잔여 총 수업횟수에 대해 출석률 2/3이상** 과목의 이수기준으로 적용 (입금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남은 수업횟수의 2/3이상)

- (이수기준 미도달 시 조치)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 미도달 학생에게 추가적인 학점 취득 기회 제공
 - (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
 - ①(출석률 미도달)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통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교양과목 포함)
 - ②(학업성취율 미도달)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
 -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에서 방학을 포함한 학기 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또는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
- (학점 취득)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이수 인정기준에 도달할 경우 학점을 취득. 단, 미도달 학생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 등을 이수하면 학점 취득을 인정
 - (귀국학생) 편입교에서 배정(결정)된 학년(학기) 이전의 학점은 편입교 교육과정의 편성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봄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 재적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서 편성한 교과를 정상 이수한 경우, 재적교 교육과정의 편성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봄

- (학생부 기재)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 인정기준에 도달할 경우 성취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 학업성취율 40% 미만인 학생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할 경우, 성취도를 'E'로 부여(3단계 산출과목은 'C'부여)하며 보충지도 사실 미기재
 - 학업성취율은 충족하고 출석률을 미달한 학생이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을 이수하지 않아 최종 미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학업성적 결과*를 미기재하고 비교란에 '미이수' 기재
 - * 최종 미이수자도 해당 과목 수강자 수에는 포함하여 원점수/과목평균, 석차등급,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 성적정보는 산출함.
 - ※ 공통과목을 기본과목으로 대체이수 하는 경우 학생부에 대체이수 과목임을 명시하고, 이수 기준 미도달 성적은 삭제 처리
- (적용 여건 고려) 교육과정 및 학생 상황(특수교육대상자, 학생선수, 이주배경 학생 등)을 고려한 학점 이수 인정 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교육과정을 고려한 운영 기준 및 방법】

구분	학점 이수 인정기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추가 학습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여 운영)	비고
	출석률 (과목출석률 2/3 이상)	학업성취율 (학업성취율 40% 이상)	이수기준 (총 보충지도 운영 시수의 2/3 이상 참여)	운영 방법 (예방지도 연계비율, 정서지원 제한 등)		
학교 내 개설	모든 과목 (교양 과목 제외)	적용	적용	적용	- 제공	학업성취율은 충족했지만 출석률을 미달한 학생 및 교양과목 출석률 미달 학생에게는 추가학습을 통해 이수기회 제공 ※ 추가학습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목 미이수 처리
	교양 과목	적용	미적용 (성취수준을 P로 산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제외	제공	
	창의적 체험 활동	적용 (3년간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3 이상)	미적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제외	별도 이수 기회 제공	학기 내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이수 기회 제공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제공	학업성취율은 충족했지만 출석률을 미달한 학생 및 교양과목 출석률 미달 학생에게는 추가학습을 통해 이수기회 제공 ※ 추가학습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목 미이수 처리
방송통신 고등학교	적용	적용	별도 적용 가능 ※ 방송통신고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제공	학업성취율은 충족했지만 출석률을 미달한 학생에게는 추가학습을 통해 이수기회 제공 ※ 추가학습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목 미이수 처리
학교 밖 교육*	적용	미적용 (성적 미산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제외		미제공	학교 밖 교육의 특성상 추가 학습 기회 제공 어려움.

* 학교 내 개설 또는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과목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교육

- 법적근거
- 기재요령 안내
- 목적 등
- 인적·학적 사항
- 출결상황
- 수상경력
- 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상황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1·2학년)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3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일상생활 활동상황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 교과학습 발달상황 (1학년)
- 교과학습 발달상황 (2·3년)
- 독서 활동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기타 사항 등
- 참고자료

【학생 상황을 고려한 운영 기준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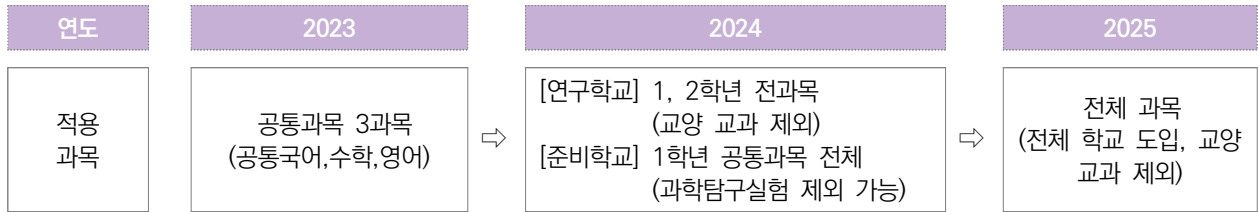
구분	학점 이수 인정기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비고
	출석률 (과목출석률 2/3 이상)	학업성취율 (학업성취율 40% 이상)	이수기준 (총 보증지도 운영 시수의 2/3 이상 참여)	운영 방법 (예방지도 연계비율, 정서지원 제한 등)	
전편입생/ 귀국학생	적용	적용	적용	적용	
특수교육 대상학생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이수기준 등 적용 가능 경우
	별도 적용 가능 (해당 학년 수업 일수의 2/3)	별도 적용 가능 미적용 가능	별도 적용 가능 미적용 가능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기준, 운영 방법(예방지도 연계비율,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 대면지도 포함 여부 등))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 안내 예정
학생선수	적용	적용	적용	별도 적용 가능 (예방지도 연계비율,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 대면지도 포함 여부 등 별도 적용 가능)	건강장애 원격수업 및 병원 학급 등 위탁교육 또는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주배경학생					
학습지원 대상학생					
전문교과 수강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생 포함)	적용	적용	별도 적용 가능 (1학점 5시수 기준 적용 시수 변경 가능)	적용	※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 안내 예정
위탁학생 등 학교 외 장소에서 수강하는 학생 (소년보호기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한국어 예비과정 등)	별도 적용 가능 (수업일수 2/3 출석 이상)	별도 적용 가능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제외		위탁기관의 특성을 고려 하여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별도 적용 필요, 추가 학습 기회 제공 어려움. ※ 단위 학교에서 성적 산출이 어려운 위탁 학생 등

※ 기준방법을 '별도 적용'하는 경우와 '추가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및 학생 상황에 따른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2.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개요

- (운영 대상·과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연계하여 '25년 고1부터 성적을 산출하는 모든 과목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 직업계고 공통과목(국어·수학·영어) 및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에 적용('22년~)

- (운영 내용) 예방보충지도의 연계-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구분	예방 지도	보충 지도
이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예상 학생 중 희망자 * 학업성취율 40%이상 및 과목 출석률 2/3이상 <p>※ 학업성취율은 충족했지만 출석률을 미도달한 학생 및 교양과목 출석률 미도달 학생에게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통해 이수기회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 * 학업성취율 40%이상 및 과목 출석률 2/3이상
이수 시기	○ 학기초 과목별로 대상 학생 선정 → 학기 중 운영	○ 학기말 과목별로 대상 학생 선정 → 학기 내(방학포함) 운영
이수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학점당 5 시수 (예 : 4학점 과목 20시수) ○ 총 운영 시수의 2/3이상 참여할 시에 이수 인정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지도, 방과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보충 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교과 수업시간에 별도 지도,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 학급) 수업,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도 등의 방법 활용 * 학습흥미 및 동기형성 프로그램, 상담, 컨설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방학중) 대면지도(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포함), 온라인 콘텐츠(EBSi) 수강,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도 등의 방법 활용
운영 절차 및 이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지도-보충지도 운영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방지도 시수의 일부를 보충지도 시수로 인정 가능함. 다만, 실효성 있는 보충지도를 위하여 가급적 보충지도로 인정하는 예방지도의 최대 시수는 총 보충지도 시수의 50% (20시수 기준 10시수) 이내로 권장 2.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는 가급적 총 보충지도 시수의 25%(20시수 기준 5시수) 이내로 운영 권장 3. 학생별 지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충지도 시 대면지도를 반드시 포함하되, 온라인 콘텐츠, 보충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4. 예방지도-보충지도 연계 이수 인정 범위,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수, 대면지도 시수 등에 대해서는 과목별·학생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 예방보충지도 대상자 선정 및 지도 방법, 이수 기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 * 보충지도는 총 운영 시수의 2/3이상 참여할 시에 이수 인정 ○ 예방·보충지도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또는 방학기간 중 지도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초·중등 교육법」 제32조제1항제6호) ○ 보충지도 참여 학생의 이수인정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
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1·2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일상생활
활동상황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과학습
발달상황
(1학년)

교과학습
발달상황
(2·3년)

독서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② 최소 성취수준 보장 예방지도

- (대상선정) 학기초, 과목 이수기준(학업성취율 40%이상 및 과목 출석률 2/3이상) 미도달 예상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
 - 별도 선정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년도 대상 학업 성취도 반영, 학생 희망, 교과 지도 교사 및 담임교사 추천, AI 디지털교과서 학습 분석 결과 등을 활용
 - * 교과 교사가 직접 개발한 평가 도구, 교육(지원)청이 개발·보급한 평가 도구, 기초학력 진단검사(학기 초), 국가 수준 평가(검정고시 등) 도구 등 활용

【대상학생 선정 방법 사례】

- A고 사례 : 자기조절 학습검사 결과,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담임 상담 등
- B고 사례 : 반편성 배치고사, 3월 전국 연합 모의고사, 교과 교사 협의

- (시기방법) 학기 중,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 * 방과후 지도, 방과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학습 흥미 및 동기 형성 프로그램, 상담, 컨설팅), 교과 수업시간에 별도 지도,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수업,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도 등

③ 최소 성취수준 보장 보충지도

- (대상·시수)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 대상으로 1학점당 5시수 적용(예시: 4학점 과목의 경우 20시수)
- (시기방법) 학기 내(방학포함),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 * 방과후(방학중) 대면지도(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포함), 온라인 콘텐츠(EBS/ 등) 수강, 보충과제 부여, 학습 멘토링,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도 등
- (이수기준) 총 보충지도 운영 시수(예방지도 연계 시수 포함)의 2/3이상 참여한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인정
 - 예방지도 연계, 정서적 프로그램 활용 등 유연한 운영을 허용하여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 학업 성취율은 충족하지만 출석률이 2/3 미만인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 성적을 인정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란에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를 기재
 - ※ 교양과목의 출석률 2/3 미만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Ⅰ 학생 상황에 따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기준 Ⅰ

- ▶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 이므로 장애특성과 정도를 반영하여 별도의 과목 이수기준 적용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이수기준 설정·운영 방법) 가능*
-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 건강장애 원격수업 및 병원학급 등 위탁교육 또는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에서 제외

▶ (학생선수) 과목 이수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기준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관련 법규에 따라 최저학력제 적용과 학력 수준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방법을 별도 설정 가능**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호(최저학력의 기준 등) : 학생선수 최저학력은 소속학교 해당학년 학생 전체의 교과별 평균 성적에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한 기준을 적용

※ 운영방법으로 'e-School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한국교육개발원) 수강' 활용 가능

▶ (이주배경학생) 과목 이수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기준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한국어 구사수준이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 등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에 한해 한국어구사 능력수준을 반영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방법을 별도 설정 가능**

*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 및 찾아가는 한국어학급 등에 재학 중이거나 다른 교과학습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여타 방법으로 증명된 학생

▶ (학습지원 대상 학생)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학습지원 대상학생은 과목 이수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기준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학력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방법을 별도 설정 가능**

▶ (전문교과 수강 직업계고 학생 및 현장실습생)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과목 이수기준은 적용하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를 위한 적용 시수는 별도 설정 가능**

※ 전문교과 콘텐츠 활용 등 다양한 보충지도 운영

▶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수강하는 학생) 소년보호기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한국어 예비과정 등 소속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으로 인해 학교 내 성적산출이 어려운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에서 제외**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기준·방법을 '별도 적용·설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
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1·2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일상생활
활동상황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과학습
발달상황
(1학년)

교과학습
발달상황
(2·3년)

독서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시 유의사항 》

- **(운영 절차)** 학교는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 사항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 **학점이수 인정기준 관련** ■

- ▶ 전·편입생, 귀국학생 등의 과목 연계에 관련된 사항(동일유사과목 결정, 인정점 부여, 학점 단위가 다른 경우의 결과 연계, 평균 결과횟수 산출 등)
-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수강하는 학생에 대한 별도 적용 사항 등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 학습 관련** ■

- ▶ 기본계획 수립, 이수 인정 여부에 관련된 사항
- ▶ 학생 상황에 따른 운영 및 추가 학습에 관련된 사항
- ※ 방과후·방학중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6호)

- **(운영 주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추가학습이 필요한 경우, 과목을 개설한 과목 담당교사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운영
 - 학교와 교사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목 담당교사가 지도할 수 없는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내 지도교사를 결정**
 - ※ 단, 교사 수급 등의 이유로 학교 내 지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
- **(안내 시행)** 학교는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 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현재 중3 포함)
 - **(학기초)** 관련 상세 내용을 전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 최소 성취수준 예방·보충지도 대상 선정 및 지도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
 - **(학기말)** 대상 학생 및 학부모가 보충지도 이수 대상임을 인지하고 보충지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안내
 - ※ 최소 성취수준 보충지도 대상 선정 및 지도 운영 방법, 참여 독려 등에 대한 내용

◆ 2025학년도 이후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본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본 운영 계획 외의 사항은 필요 시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